

2024. 7. 17.(수) 14:00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룸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 브리핑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I. 추진 경과

---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 양청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브리핑에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개인정보위는 사회 전 부문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작년 8월 「AI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AI 산업의 혁신과 발전, 인공지능·데이터 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2월 발표된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5월 발표된 「합성데이터 생성 참조모델」에 이어

3번째로 발표하는 이번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인공지능·데이터 처리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대규모 언어모델(LLM) 등 AI 개발에 ‘핵심원료’인

공개된 개인정보가 적법하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불확실성을 낮추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AI 분야 차세대 전문가가 참여하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마련되었고, 각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II. 안내서 마련 배경

---

현재 우리가 일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ChatGPT, 하이퍼클로바X 등 국내외 주요 AI 모델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물이며, 주로 위키백과(wikipedia), 블로그, 커먼 크롤(common crawl) 등 다양한 웹사이트에 공개된 데이터가 학습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개 데이터에는 주소, 이메일, 고유식별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없이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나,

현행 법제에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명시적 기준이 없어 기업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AI 개발 및 서비스를 위해 공개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안내하고, AI 기업이 이행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조치를 'AI 학습-서비스' 주기별로 안내하였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주요국에서도  
공개 데이터를 포함한 AI·데이터 처리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형성하고 있어,  
글로벌 상호운용성 확보 측면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Ⅲ. 안내서 주요 내용

---

① 먼저, AI 개발을 위해 공개된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근거로서 '정당한 이익' 적용 기준·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공개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특정 서비스를 매개로 연결되는 직접적 관계가 없어  
개별 동의나 계약 체결 등의 근거 적용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이에, AI 개발 목적과 공개된 개인정보의 특성,  
리스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자 이익과 정보주체 권리를 비교형량하는  
'정당한 이익' 조항이 실질적인 적법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조항을 원용할 수 있는 기준·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정당한 이익 성립 요건은 크게 3가지로,  
첫 번째 요건은 ① **목적의 정당성**입니다.  
AI 기업은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를 통해 개발하려는  
AI의 목적·용도를 구체화하여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②처리의 필요성입니다.

AI 개발·서비스에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과  
상당성·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의료진단보조 AI를 개발하는 경우,  
개인의 소득·재산 등 AI 목적과 관련 없는 정보는  
학습데이터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마지막 요건은 ③구체적 이익형량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 권리에  
명백히 우선하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때, AI 기업은 안내서에 제시된 안전성 확보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을 적절히 도입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② 다음으로 AI 기업이 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과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서는 빠른 기술변화를 고려하여  
AI 기업이 유연하게 도입·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안내하였습니다.

AI 기업은 기술적 조치의 일환으로

- ▲ 학습데이터 수집 출처의 적법성 검증,
- ▲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조치,
- ▲ 미세조정을 통한 안전장치 추가,
- ▲ 프롬프트 및 출력 필터링 적용 등을 고려할 수 있고,

## 관리적 조치로서

- ▲ 학습데이터 수집·이용 기준 정립·공개,
- ▲ ‘(가칭)AI 프라이버시 레드팀’ 구성·운영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내서에 제시된 모든 조치의 이행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AI 기업은 개별 조치의 장·단점, 편향·차별 등 부작용, 성능저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안전조치의 최적 조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이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발표한 주요 LLM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AI 기업들이 도입한 안전성 확보조치의 방식·수준은 다양했습니다.

AI 학습 단계에서 특정범주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는 사전조치에 중점을 둔 기업도 있는 반면, AI 서비스 단계에서의 사후 필터 조치에 중점을 둔 기업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안전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각 조치들이 갖는 장·단점이 있고 기술변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특정한 조치들을 정해서 권고하기 보다는, 각 기업이 자신들의 AI 모델의 특성, 학습데이터 출처 등을 고려해서 안전조치의 최적 조합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AI 기업이 「**최적 조합**」을 선택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LLM 기업의 실제 안전조치 이행사례를 종합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AI 환경에서 약화될 수 있는 정보주체 권리를 보완하여 AI 기업이 이행할 수 있는 권리보장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보주체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사실과 주요 수집출처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안내하고,

실제 정보주체 권리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삭제·처리정지 등 신속한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㉓ 마지막으로, **책임있는 AI 개발·활용을 위한 AI 기업의 역할을** 제시했습니다.

AI 기업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구심점으로 하는 ‘(가칭)AI 프라이버시 담당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안내서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 그 근거를 작성·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AI 성능 개선 등 중대한 기술적 변경이나 개인정보 관련 리스크 요인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권리 구제 방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 IV. 마무리 말씀

---

이번 안내서는 현시점의 해석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향후 기술발전 추이, 관련 법령 제·개정, 해외 동향 등을 참고해 지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전적정성 검토제, 규제샌드박스 등 다양한 혁신지원제도를 통해

AI 기업,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한편,  
곧 출범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해  
AI·데이터 프라이버시 정책을 정교화해 나가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  
보다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